

# 주식회사 GS 정 관

제정	2004년 07월 01일
개정	2005년 03월 25일
개정	2008년 03월 07일
개정	2009년 03월 20일
개정	2010년 03월 19일
개정	2011년 03월 25일
개정	2012년 03월 23일
개정	2019년 03월 22일
개정	2021년 03월 29일
개정	2024년 03월 28일

## 제 1 장 총 칙

###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지에스라 하고, 약칭으로는 주식회사 GS, 영문으로는 GS Holdings Corp. 로 한다.

###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과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3. 수출입업 및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4. 전자계산기 시간대여업
5. 컴퓨터 소프트웨어 매매 및 대여업
6. 각종 통계 및 분석과 처리작업 청부업
7. 부동산 매매 및 임대
8. 창고업

9. 각종 상품의 매매
10. 각종 상품의 위탁 및 수탁매매 대리업
11. 과학기술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연구의 용역과 기술정보의 매개
12. 기술용역업
13. 국내외 무역업 및 이에 수반되는 청부업
14. UTILITY(유틸리티) 판매
15. 위탁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업
16. 교육서비스업
17.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제품 매매 및 관련 부대 사업
18.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19. 정보의 운영 및 판매
20. 통신서비스 관련 대행용역 제공
21. 전자전기기계기구의 임대업
22.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23. 팩토링업
24.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25. 자원탐사 및 개발
26. 이상의 각종 원료, 자재, 제품을 소재로 한 제2차 제품의 제조·가공·보존 및 매매
27. 금융업 <2021.3.29 추가>
28. 전기 각 항 및 그에 관련된 위탁매매
29. 전기 각 항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30. 전기 각 항에 관련한 사업에 대한 투자

###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4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 식

###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억오천만주로 한다.

###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구천사백칠십만이백사주로 한다.

### 제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제9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 내로 한다.
- ② 우선주식의 우선배당율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5%이상으로 하고, 발행시에 이사회가 그 율을 정한다. 단, 우선배당율을 조정할 수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누적적(어느 사업년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 또는 비누적이거나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

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⑦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우선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누적된 미배당분 및 그 후의 우선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존속기간 만료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의2 (상환주식)

- ① 회사가 우선주식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하는 상환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시까지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③ 회사가 발행된 상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상환한다. 그 계산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 ④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 제9조의 3 (전환주식)

-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과 동수로 한다. 다만, 이사회가 발행시에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주주권의 희석 방지를 위하여 전환가액 또는 전환비율의 조정조항을 둘 수 있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11조 (신주의 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단, 4호 내지 6호에 대한 신주배정은 각호의 배정 비율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 1. 관계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하는 경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서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경영상 필요로 합작투자선에게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5.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거래 금융기관 또는 전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기술도입을 위해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회사를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법률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당해 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제12조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 3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6조의 7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는 기발행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기발행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

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당해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5조 <삭 제>

#### 제16조 (기준일)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7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전문 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6.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칠천억원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 삼천억원 범위 내에서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제1항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⑥ 제14조는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전문 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이천오백억원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 이천오백억원 범위 내에서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제14조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8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3 장      주 주 총 회**

### **제19조 (소집)**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6조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③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④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

집통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1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하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3조 (의결권)**

주주는 그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 **제2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이를 결정한다.

## 제26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제 4 장 이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 제27조 (이사의 선임)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로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② 제1항의 이사 선임시에는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상법상 집중투표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 제28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임기가 최종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할 때에는 그 총회 종료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제29조 (이사의 결원)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행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및 직무)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 등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각자 이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대표이사 결원 또는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1조 <삭 제>

### 제32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서 조직하고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제33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권한·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4조 (이사의 의장)

이사의 의장은 회장이 이에 임한다. 회장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5조 (이사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12시간 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 제36조 (이사의 결의방법)

- ① 이사의 결의는 법령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② 이사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37조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그 안건, 경과요령과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제38조 (감사위원회)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둔다. 단,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39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와 상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 제40조 (이사의 퇴직금)

다음 각호의 1에 계기하는 자에 대한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1. 이사
2. 제1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제 5 장 계 산

### 제41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2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 ① 대표이사는 매결산기말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3조 (이익금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제44조 (주주배당금)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5조 (중간배당)

-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제46조 (배당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

이 회사는 주식회사 엘지의 회사분할(분할기일 : 2004년 7월 1일)에 의하여 설립되며 동 분할로 인하여 이 회사에 이전되는 재산 및 그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2004년 5월 28일자 주식회사 엘지의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식회사 엘지의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제3조 (사업년도에 관한 특례)

이 회사의 최초 사업년도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일로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 조치)

- ①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설립 시에 주식회사 엘지의 기명식 우선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정할 이 회사의 우선주식은 이 회사의 설립 전 주식회사 엘지가 개정상법시행일(1996.10.1)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보통주식 배당률 + 1% 추가현금배당 우선주식)과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② 전항에 의하여 발행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이 회사가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 제5조 (분할 전 회사의 명칭과 주소)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분할 전 주식회사 엘지의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

분할 전 주식회사 엘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이사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2004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주식회사 엘 지  
대표이사 강유식

## 부 칙(2005년 3월 25일)

### 제1조 (시행일)

제2조(목적) 25항은 200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년 3월 7일)**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주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년 3월 20일)**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년 3월 25일)**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년 3월 23일)**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36조, 제42조, 제44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년 3월 22일)**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8조의2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년 3월 29일)**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년 3월 28일)**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